

의안번호	2220052
의 퇴 인	서영교의원
회 답 일	2026.8.12.
추계번호	26D3659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6조(수사 인권보호관)	- 각 수사기관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, 영장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절절차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 인권보호관을 둠 - 수사인권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95조의3 (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및 구성)	-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과 수사기관의 조사·수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소속으로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둠 -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이 됨	의무규정
3	안 제198조의3 (수사심의 등)	- 사건관계인이 수사기관에 신청한 조사·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둠 - 수사심의위원회는 3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, 위원은 각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함	의무규정
4	안 제245조의11 제4항(고소인등의 수사기록 열람·복사)	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245조의12 (피해자 이의제기)	-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6개월 이상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,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헌법상 및 법령상 권리를 침해하여 피해자의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담당자의 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-피해자가 이의제기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거나 기간 내 결정이 없을 경우 상급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, 상급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조치 결정 또는 기각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6조(수사 인권보호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95조의3 (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및 구성)	
3	안 제198조의3 (수사심의 등)	
4	안 제245조의11 제4항(고소인등의 수사기록 열람·복 사)	
5	안 제245조의12 (피해자 이의제기)	

2. 상세 사유

□ 국가수사인권보호관 및 수사인권보호국(안 제195조의2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수사인권보호관과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소속으로 수사인권보호국을 두는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참고로,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음¹⁾
 - －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(차관급)이 겸직하고 있고 임기는 3년이며,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

1) 2024년 예산 기준 ‘군인권 보호 및 증진’사업으로 5억 1,200만원 편성
2024년 기준 군인권보호관의 연간급여(수당 포함 금액)은 연 151,260,000원이고, 기본급 외 수당은 가족수당(연 480,000원), 정액급식비(연 1,680,000원), 직급보조비(연 11,400,000원)임

위한 지원조직이 있음

- 다만,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의 임기 및 직위 등을 예측할 수 없고 군인권보호관과 제정안에 따른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, 업무량 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국가수사심의위원회(안 제195조의3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참고로, 2026년 기준 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20만원²⁾, 안전검토수당은 각 기관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위원회의 경우 「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」³⁾에서 1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
- 다만,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위원회의 개최 주기, 연간 심의 건수 등 운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,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각 수사심의위원회(안 제198조의3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각 수사기관에 3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에는 위원 정수의 범위만 규정되어 있을 뿐, 구체적 정수, 회의 개

2)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(기획재정부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).

3) 「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」 제3조(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·회의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,000원 이내의 안전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.

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(200자 원고지 120장)을 초과하고,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,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최 주기 등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, 각 수사기관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설치 대상 기관의 수를 확정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피해자 등의 수사기록 열람·복사(안 제245조의11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때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, 서면 통지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통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, 열람 또는 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건수, 통지 방법의 종류와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피해자 이의제기(안 제245조의12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등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, 그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
- 또한, 이의제기에 대한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, 기한 내 결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등은 상급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상급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결정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
- 개정안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통지 규정을 신설할 경우 서면 통지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통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, 이의제기 건수, 통지 방법의 종류와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nabo.go.kr